

##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

### The Ministry of Labor's Approach Towards Architects

장양순 / 본지 편찬위원장, 동명건축  
by Chang Yang-Soon

작년 한 해 매스컴들은 다가올 새 천년에 대한 세계 석학들의 미래 예측 특집들을 만들었다. 이제 그 대망의 새 천년을 맞은지도 벌써 달포가 지났다. 천년의 세월로 본다면 티끌과 같으나 이 짧은 기간에도 세상은 그들의 예측처럼 눈부시게 진보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일본 모 대학 의학팀은 체세포 하나로 인체의 어떤 기관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가 하면 IMT-2000 즉 국제 이동통신 영상전화가 한일간의 첫 통화를 성공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학·과학 분야 외에도 휴대폰으로 은행업무를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Mobile Banking)의 시작, 인터넷 금융거래의 폭발 그리고 작년 11월 이후 서울에서 사망한 사람의 55%가 화장을 한 것 등 디지털시대에 맞는 기술개발과 함께 의식혁명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답보하는 쪽도 있다.

당리를 우선하는 정당들은 선거구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해 급기야 민간인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결정을 보게 하였다. 그럼에도 선거법은 1인 1투표제와 2투표제가 대립되어 시한전에야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이렇게 자신들에 관한 법률도 제때 처리 못하면서 얼마 전에는 부실공사 건설기술자는 사형이라는 「반신퇴 부정확 부실 전문가 사법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성안하여 변호사협회 등으로부터 형이 지나치게 무겁고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 물이 맑다고 정치권이 이러하니 사회상 또한 서글픈 현실 뿐이다. 이기주의와 금전만능주의는 병원과 초등학교의 급식용 쇠고기를 폐기 처분된 젓소고기로 납품케 하였으며 성적타락은 급기야 초등학생까지 원조교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행정 또한 편의주의가 속출하고 있다. 우리 건축사들만 하여도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설계책임은 건축사가 시공책임은 기사나 기술사가 그리고 검사책임은 당해 관청의 공무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하면 되는 것을, 시공 및 사용검사 그리고 사후 일정기간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받는 불이익이 어찌 한 두가지인가.

얼마 전 노동부에서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소관부처가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자격을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여 통일된 기준 하에 관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본 협회에 의견조회가 있었다. 내용인즉 건축사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건축사자격을 상법률에 의하여 운영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동부의 통합방안을 보면 현행 국가자격 관리체계는 국가(기술)자격, 민간자격, 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자격을 통일적 운영을 저해하고 유사한 국가자격을 남발로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가기술 자격법 및 자격기본법을 통합, 「자격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자격을 원칙적으로 동법에 의하여 관리 운영하되 다만 특수성이 인정되는 국가자격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서 현행대로 관장토록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국가자격 기본법에 의한 기술자격은 총 599개 종목으로 기사, 기사, 기술사 등이 이에 해당되며 개별법령에 의한 국가자격 종목은 118개로써 건축사, 의사,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세무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노동부 안에 따르면 건축사는 국가기술 자격과 상호 중복 또는 유사종목으로 분류되어 통합해야 하는 쪽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에 비해 통합 제외 자격 목록을 보면 첫째,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되 단계별 자격등급 체계가 필요없는 자격으로 법무사, (한)약사, (한,치과)의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응급구조사의 13종목을 기술하고 있다. 둘째, 산업인력의 수급 동향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하여 주무부 장관이 전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자격에는 감정평가사, 비행기조종사 등 30종목이 있다. 건축사의 경우 이 두 항목에 모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불행히 어느 항목에도 들어 있지 아니하다.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였다. <건축이 어떤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더 없이 좋은 해였으며 나름대로 노력도 하였다. WTO는 건축사자격의 국가간 상호 인증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과 집행을 UIA에 위임하였고, 이들은 기준을 제정하여 총회에서 통과시켰다. 건교부, 교육부와 우리협회를 비롯한 유관단체들은 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이미 건축교육에 관한 공청회를 2차에 걸쳐 시행했으며, 이에 관한 본협회 회장의 컬럼이 조선, 동아일보에 게재된 바 있다. 그럼에도 노동부의 법안 제정 실무자들은 건축사가「고도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되 단계별 자격등급제가 필요없는 자격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UIA는 건축사의 자격요건을「건축물의 미적, 기술적 사항을 이해하고 자금 조달, 공사비 산정 등 건축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제3의 기관이 인증한 대학에서 제3의 기관이 인증한 건축관련 교과목을 최소 5년 이상 교육 받은 후 지도건축사 감독 하에 설계에서 계약관리까지, 대학 졸업 후 최소 2년간 실무경력을 쌓아야 하고 인턴과정 후 시험 또는 인터뷰를 통해 능력과 지식을 검증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UIA 요건이 아니어도 현행 국내법 상으로 우리 건축사는 여타 기사나 기술사들과 자격요건과 시험과목 자체가 다르다.

이 문제는 협회에서도 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 오류와 부당성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변호사나 의사와 같이「고도의 전문 지식을 요구하되 자격 등급체제가 필요없는 자격」으로 분류되어 통합제외 자격에 자리매김 되리라 믿는다. 그러나 며칠 전 변호사의 특권(세무사, 변리사 자격 보유)폐지 법안이 끝내 무산 된 바와 같이 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당위성이 제대로 수용될 지 일말의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노동부의 무지를 탓할 수도 있고, 무사안일주의로 매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한번 확고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정부 각 부처와 국민들에게 알려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정치권에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지지여부 등 영향력을 행사하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AIA처럼 정회원 외에 준회원, 예비회원, 재휴회원, 학생회원 등 회원을 다양화하고 증가시켜야 한다. 이는 비단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 뿐 아니라 향후 우리협회의 운영 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축사에 대한 노동부의 인식이 한심하고 섭섭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를 다시한번 되돌아 보고, 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승적 방법이며, 앞날의 발전을 기약하는 또 하나의 작은 계기가 될 것이다.